

일제하 김병로의 경력과 활동에 관한 재론

진병무*

목 차

- I. 머리말
- II. 김병로의 경성전수학교 경력
- III. 김병로의 판사임용 경위 및 활동
- IV. 김병로와 형사변호공동연구회
- V. 맺음말

[국문 요약]

이 글은 일제하 김병로의 경력과 활동 중 경성전수학교 경력, 판사 임용 경위 및 활동, 형사변호공동연구회 문제 등에 대해 객관적 자료에 입각해 실증적으로 재검토한 것이다.

가인은 1915년 9월 (前)경성전수학교 교유(판입관)로 임명되었다가, 1916년 4월 1일 전문학교인 경성전수학교 조교수(판입관)로 수평 이동하여 다시 임명되었다. 1918년 10월 10일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를 겸하면서 고등관 8등 즉 주입관으로 승진하였다. 경성전수학교 재직 시절 그의 경력에서의 핵심은 판입관에서 고등관으로의 승진이었다. 고등관 8등으로의 승진은 향후 조선총독부 판사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가인의 판사 임용 경위는 3·1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법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1910년대 사법관 특별임용정책의 일환이었다. 다만, 통상적인 특별임용 전형방식과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병로는 1919년 4월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로 보임되었다가 곧바로 동년 5월에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다시 보임되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약 1년간 재직하다가 의원면직하였다. 일제하 조선인 판사가 항일운동사건의 판결에 참여한 사례는, 합의부 판사나 혹은 단독 판사나 차이는 있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김병로가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고 또 3·1운동 혹은 항일운동사건의 재판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변호사 김병로의 행보에 허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는 1923년 2월경 서울 종로 인사동 75번지에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명칭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였으며, 1926년 단계에서 “형사공동연구회”로 개칭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회원은 대체로 5인~6인으로 유지되었다. 창립 초기에는 김병로, 허헌, 이승

* 강릉원주대 연구교수

우, 김용무, 김태영 5인이었고, 한때 이증성의 가세로 6인 체제가 되었다. 1924년 이승우가 항일전선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5인 체제가 되었다. 1926년 4월 이후 항일변론에 선두에 섰던 이인·권승렬·이창휘 등이 결원 등의 이유로 합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아일보』에 총 11회 게재한 연구회의 광고에 근거하여 새롭게 규명된 사실이다.

[주제어] 김병로, 경성전수학교, 사법관 특별임용, 항일변호사, 부산지방법원, 형사변호 공동연구회(형사공동연구회)

I. 머리말

그동안 가인 김병로에 대한 연구는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논저가 발표되었다.¹⁾ 특히 한인섭 교수는 김병로와 관련한 기존 자료들을 섭렵하는 한편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최근에 이를 수정, 보완하여 방대한 분량의 평전을 학계에 내놓았다.²⁾ 이러한 김병로 연구는 그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다만, 일제하 김병로의 경력과 활동 중에서 연구자마다 달리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김병로가 1915년 7월 일본 유학을 마치고 취직했던 京城專修學校의 敎諭와 助敎授 경력, 1919년 4월 김병로가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용된 경위 및 재직시 활동, 김병로가 항일변론을 위해 주도적으로 조직한 형사변호공동연구회(형사공동연구회)³⁾의 명칭 및 창립시기, 참여회원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객관적 자료에 대한 수집 및 발굴 그리고 정밀한 검증의 노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이에 본 글은 이렇듯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을 실증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1) 대표적인 논저는 다음과 같다. 김진배, 『가인 김병로』(삼화인쇄주식회사, 1983);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민음사, 1988); 최종고, 『김병로』, 『한국의 법률가』(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경인문화사, 2012); 정공식, 『사법부 독립의 초석, 가인 김병로』,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 김병로·최대교·김홍섭』(일조각, 2015).

2) 한인섭, 『가인 김병로』(박영사, 2017).

3) 필자 역시 형사변호공동연구회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전병무, 『일제하 항일변호사 이창휘의 생애와 활동』, 『한국학논총』 제46집(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349~350면). 후술하겠지만 오류가 많은 정리였다. 본 글을 쓴 목적 중에 하나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자 한다. 기존 자료들을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한편 『동아일보』에 게재된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광고를 소개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힐 것이다. 이 글을 통하여 일제하 김병로의 경력 및 활동 등이 보다 명확해져 그의 생애와 활동 그리고 사상을 조명하는 데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김병로의 경성전수학교 경력

1915년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김병로는 동년 9월부터 1919년 4월까지 경성전수학교의 교유와 조교수를 지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마다 조금 달리 서술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학준은, “『서울법대백년사: 자료집』에 따르면, 가인은 1915년 9월부터 1919년 4월까지 조교수로 봉직했다.”⁴⁾라고 하였다. 최종고는, “가인은 이 학교(경성전수학교-필자)에 조교수로 임명되어 자신이 배운 법학지식을 한국인 젊은이들을 위해 가르쳤다.”⁵⁾라고 하였다. 정공식은, “1915년 7월 귀국한 가인은 법관양성소의 후신인 경성전수학교 법률학 조교수로 발령받아 1915년 9월부터 1919년 4월까지 봉직하였다.”⁶⁾라고 하였다. 한인섭은 “김병로의 전임교수는 1919. 9. 30. “교유”로 임명됨으로써 시작되었고, 1917년에는 조교수로 승진했으며, 이듬해에는 경성보통학교 교유까지 겸하게 되었고, 서임된 지위는 “고등관 8등”이었다.”⁷⁾라고 하였다.

김학준, 최종고, 정공식은 『서울법대백년사 : 자료집』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집에 인용된 자료는 『경성법학전문학교일람』(1927년 판)으로, “舊경성전수학교직원” 항목에는 “재직연한 : 1915년 9월부터 1919

4) 김학준, 위의 책, 86면.

5) 최종고, 앞의 책, 161~162면.

6) 정공식, 앞의 책, 97면.

7) 한인섭, 「법학교육자 김병로-경성전수학교 및 보성전문학교에서 법학 강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77(고려대 법학연구원, 2015), 360면; 한인섭, 앞의 책, 52면.

8) 서울법대백년사발간준비위원회 편, 『서울법대백년사: 자료집(광복전 50년)』(서울대학교법과대학 동창회, 1987), 213면.

년 4월까지, 직명 : 조교수, 현직: 변호사(경성), 이름 : 김병로”로 나와 있다. 이 보다 앞서 출간된 『경성법학전문학교일람』(1923년판)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⁹⁾ 따라서 이들 자료들을 보면 김병로가 1915년 9월부터 1919년 4월까지 경성전수학교 조교수로 재직했다고 볼 수도 있다.

최근에 정리된 한인섭의 연구는 『조선총독부관보』를 활용하여 임용날짜와 직위 등을 파악하였다. 김병로의 경성전수학교 경력을 둘러싼 전후 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하였으나, 결정적으로 『조선총독부관보』 일부를 누락하였다. 아래는 누락된 『조선총독부관보』를 보충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1】 김병로의 경성전수학교 경력

일시	내용	『조선총독부관보』
1915. 9. 30	김병로를 경성전수학교 교유에 임명하고, 6급봉을 준다.	1915. 10. 2
1916. 4. 1	김병로를 경성전수학교 조교수에 임명하고, 6급봉을 준다.	1916. 4. 10
1917. 12. 31	경성전수학교 조교수 김병로에게 5급봉을 준다.	1918. 1. 26
1918. 10. 10	경성전수학교 조교수 김병로를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로 겸임하고 고등관 8등에 敍한다.	1918. 10. 19
1918. 12. 20	김병로를 정8위에 敍한다.	1918. 12. 26
1919. 4. 16	경성전수학교 조교수 겸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 정8위 김병로를 조선총독부관사에 임명하고 고등관 8등에 敍한다.	1919. 4. 23

김병로는 1915년 9월 30일자로 경성전수학교 교유로 임명되었으나, 1916년 4월 1일자로 동교 조교수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일단 앞의 연구들은 이 부분을 빠트렸고, 게다가 1917년에 조교수로 승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1917년에 조교수로 승진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며, 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官等의 변화이다. 이는 경성전수학교의 연혁과 관련이 있다. 당시 경성전수학교는 조선에서 유일한 법학 교육기관이었다. 경성전수학교는 1911년 11월 1일에 종전의 법학교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학교였다.¹⁰⁾ 이

9) 경성법학전문학교 편, 『경성법학전문학교일람』(경성법학전문학교, 1923. 11), 57면.

10) 『조선총독부관보』, 1911. 10. 20. 「京城專修學校規程」.

학교는 “조선인 남자에게 법률 및 경제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서公私의 업무에 종사할 자를 양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법관양성소 또는 법학교는 법관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경성전수학교의 목적은 “법관의 양성” 대신에 각급 관공서에서 근무할 관리 양성이었던 것이다.

경성전수학교는 학교장을 奏任官으로 補하고 전임으로 교유 9인을 임명하되 주임관 4명, 判任官 5명으로 보하도록 하였다.¹¹⁾ 학교장은 조선총독의 명을 받아서 교무를 담당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였고 교유는 생도의 교육을 맡도록 하였다. 수업 연한은 3개년이었고 교과목은 수신, 국어, 법학통론, 헌법 및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경제, 실무 연습, 체조 등이었다. 학기는 3학기제로 운영하였는데 제1학기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학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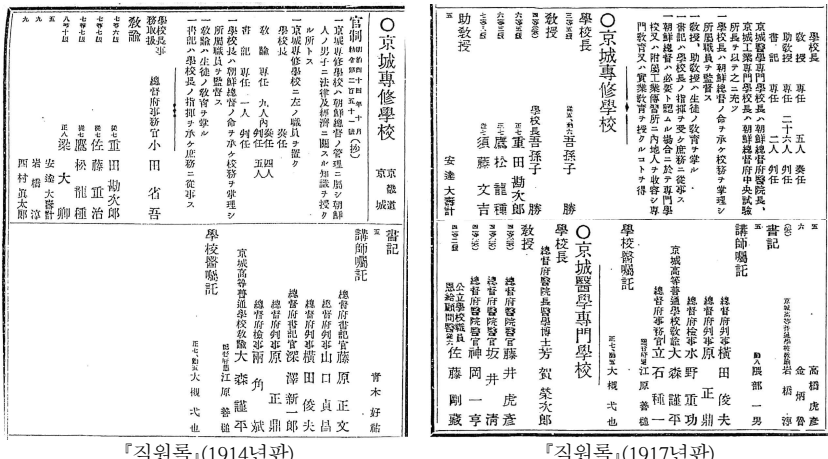
그러다가 조선총독부는 1915년에 「전문학교규칙」을 공포하고 1916년 4월 1일에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를 제정하여 경성전수학교를 조선총독부 전문학교로 규정하였다.¹²⁾ 이에 기존의 경성전수학교규정은 폐지되었으나, 학교명만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결국 1911년에 설치된 경성전수학교(이하 (前)경성전수학교)와 1916년에 개교한 경성전수학교는 급이 다른 학교였다. 다만 1916년의 경성전수학교는 (前)경성전수학교의 교수과목, 학기, 수업연한 등을 거의 그대로 따랐다.¹³⁾ 다른 부분은 첫째, “조선교육령에 근거하여 법률, 경제에 관한 전문교육을 하는 곳으로 공사의 업무에 종사할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입학대상을 종전의 “조선인 남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이른바 제국신민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경성전수학교의 직원은 학교장(주임관), 전임으로 교수(주임관) 3명과 조교수(판임관) 3명, 서기 1명(판임관)을 두도록 하였다. 즉 (前)경성전수학교의 교유는 경성전수학교의 관제에서는 교수 3명(주임관)과 조교수(판임관) 3명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11) 『조선총독부관보』, 1911. 10. 16. 「京城專修學校官制」.

12) 『조선총독부관보』, 1916. 4. 1. 「朝鮮總督府專門學校官制」.

13) 『조선총독부관보』, 1916. 4. 1. 「京城專修學校規程」.

그렇다면 다시 김병로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1915년 9월 30일자로 (前) 경성전수학교 교유로 임명되었으나, 주임관인지 관임관인지는 분명치 않다. 주임관과 관임관의 구별은 매우 중요한데, 그 지위와 대우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의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주임관은 사무관(5급) 이상이고, 관임관은 주사(6급) 이하와 비슷하다. 일제하 관리는 그 직무의 성질, 임용형식, 임용자격 등의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되나, 임용형식에 따라 고등관(1등~9등)과 관임관(1등~4등)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⁴⁾ 고등관은 주임관(3등~9등)→勅任官(1등~2등)→親任官으로 구성된다. 고등관은 형식적으로 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관리이다. 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친임관의 경우 조선에서는 조선총독과 정부총감뿐이었다. 조선총독부의 관검사는 고등관의 첫 단계인 주임관부터 출발하였다. 관임관은 천황의 위임을 받은 각부 장관이 그 진퇴를 專行하였다. 관임관은 대개 중견으로서 각 관청의 실무사무를 집행하고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조선총독부 재판소의 경우는 書記가 이에 해당한다.



【그림 1】『직원록』의 경성전수학교

14) 秦郁彦 편, 『日本官儀制總合事典 1868-2000』(東京大學出版會, 2001), 382-384면.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매년 본부와 소속관서 직원의 소속, 관등, 월급 등에 관한 사항을 인쇄하여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이하 『직원록』)을 발행하였다. 여기서는 고등관, 판임관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고등관은 ‘몇等 몇給’으로 표시하는데 等は 관등, 給은 봉급을 나타낸다. 판임관은 단순히 ‘몇급’ 또는 봉급을 나타내는 ‘월(○○)’로 표기하였다.¹⁵⁾

김병로는 『조선총독부관보』에 6급봉, 5급봉을 받았다는 것과 『직원록』(1917년판)에 ‘6’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판임관 교유와 조교수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前)경성전수학교 교유(주임관)였던 양대경과 비교해보면 <그림 1>에서 보듯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즉 교유(주임관)인 양대경은 “8등 10급”으로, 조교수(판임관)인 김병로는 “6”으로 기록하고 있다.

결국 김병로는 1915년 9월 (前)경성전수학교 교유(판임관)로 임명되었다가, 1916년 4월 1일 전문학교인 경성전수학교 조교수(판임관)로 수평 이동하여 다시 임명되었다. 그러다가 1918년 10월 10일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를 겸하면서 고등관 8등 즉 주임관으로 승진하였다. 고등관으로의 승진은, 향후 조선총독부 판사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Ⅲ. 김병로의 판사임용 경위 및 활동

가인은 앞서 보았듯이 1919년 4월 16일자로 경성전수학교 조교수 겸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에서 조선총독부 판사로 임용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는 한인섭의 지적처럼 김병로의 판사 임용의 경위 및 활동, 그리고 판사재임기간 등에 대하여 여러 혼선이 있었다.¹⁶⁾ 여기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일일이 소개하기 보다는 이를 종합, 정리한 한인섭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김병로의 판사임용 날짜와 재임기간 등에 대해 한인섭은, “조선총독

15) 小野鳴川, 「官吏學要綱(其七)」, 『法制』 제39권 제10호, 1933. 10), 41면(장신, 「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 『역사문제연구』 제8호(역사문제연구소, 2003), 55면, 재인용)

16) 한인섭, 앞의 책, 69면.

부 관보가 확실한 자료이다. 관보에 따르면 그는 1919. 4. 16. 조선총독부 판사로, 11급봉을 하사받았으며,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로 補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1919. 10. 25. 고등관 8등에서 고등관 7등으로 陞敍되었다. 그러다가 그는 1920. 4. 17.자로 판사직을 의원면직하였다. 그러니까 정확히 만 1년간 판사직을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1919년 4월 16일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로 임용되어 1920년 4월 17일 의원면직할 때까지 약 1년간 밀양지청 판사로 재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인섭의 정리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아래는 필자가 『조선총독부관보』에서 김병로의 판사재직 관련 부분을 뽑아서 정리한 것이다.

【표 2】 김병로의 판사재직 관련 사항

일시	내용	『조선총독부관보』
1919. 4. 16	조선총독부판사 김병로를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로 補하고 11급봉을 하사한다.	1919. 4. 23
1919. 5. 29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 김병로를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보하고 11급봉을 하사한다.	1919. 5. 31
1919. 10. 18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병로에게 연봉 800원을 하사한다.	1919. 11. 1
1919. 11. 29	정8위 김병로를 종7위에 叙한다.	1919. 12. 5
1920. 4. 17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병로에게 연봉 900원을 하사한다. 조선총독부 판사 김병로를 依願免本官한다.	1920. 4. 23

기존 연구와 가장 큰 차이는 1919년 4월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으로 보임되었다가 곧바로 동년 5월에 부산지방법원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직원록』에 의해서도, 1920년 1월 1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확인된다.¹⁷⁾ 이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약 1년간 재직하다가 의원면직하였다.¹⁸⁾ 이제까지 연구들은 김병로가 밀양지청의 판사가 된 것만 확인하여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사실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후술하겠지만 한인섭

17) 조선총독부 편,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1920년판), 참조.

18) 김병로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 고등관 7등으로 승서되었다(『매일신보』, 1919. 10. 25).

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밀양지청 판사로 확신하고, 밀양지역의 3·1운동과 관련한 문제만을 검토한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

다음으로는 김병로의 판사임용 과정과 판사 재직시 활동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김병로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배경 및 판사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것이 김진배의 글이다.

1919년은 가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해가 됐다. 3·1운동을 계기로, 전문학교 강사이던 그에게 판사 특별임용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소원이던 변호사의 길은 판사로 임용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그는 밀양지방법원 판사로서 밀양에 내려갔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것은 독립운동자에 대한 재판이었다. 이것은 그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1년도 못되어 그는 판사 자리를 내던지고 독립운동자의 편에 섰다.¹⁹⁾

위의 글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김병로의 판사 특별임용 문제이다. 김진배는 “3·1운동을 계기로” 김병로에게 특별임용의 기회가 주어져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한인섭은 “3·1운동 때문에 사건이 폭주했기 때문에 판사의 수가 대폭 부족하여, 법률실력이 있는 조선인들을 대거 판사로 임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억측일 뿐이다.”²⁰⁾라고 한 것은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특별전형을 통해 판사로 임명된 조선인은 거의 없다는 것과 1918년부터 판사의 특별전형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법관 임용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²¹⁾ 조선총독부는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재판소를 설치하면서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두 가지 제령을 공포하였다. 하나는 제령 6호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²²⁾」이고, 또 하나는 제령 7호 「조선인인 조선총독부재판

19) 김진배, 앞의 책, 41면.

20) 한인섭, 앞의 책, 71면.

21) 전병무,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역사공간, 2012), 31~43면.

22) 『조선총독부관보』, 1910. 10. 1.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

소 직원의 임용에 관한 건²³⁾이다.

먼저 제령 6호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은, “조선총독부의 판사 및 검사는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판사나 검사 또는 사법관시보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한다. 조선총독부 판사의 직에 있는 자는 조선총독부 검사에, 조선총독부 검사의 직에 있는 자는 조선총독부 판사에 특별히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부칙 중에 “본령을 시행하는 때에 統監府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는 본령 시행하는 때에 한하여 특별히 이를 조선총독부 판사 또는 검사에 임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재판소구성법은 일본의 ‘재판소구성법’²⁴⁾을 말한다. 즉 조선총독부 판사와 검사는 일본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판사, 검사 또는 사법관시보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고, 조선총독부 판사와 검사는 상호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였다.²⁵⁾ 그리고 당시 통감부 판사와 검사는 조선총독부 판사와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령 6호에 따르면 김병로는 조선총독부 판사가 될 수 없었다.

둘째, 제령 7호 「조선인인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의 임용에 관한 건」은, “제1조 제국대학이나 관립전문학교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교에서 3학년 이상 법률학과를 수료하고 졸업한 조선인은 문관고등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서 특별히 조선총독부 판사 또는 검사에 임용할 수 있다. 제2조 본령을 시행하는 때에 현재 統監府 판사 또는 검사를 하는 조선인은 특별히 조선총독

23) 『조선총독부관보』, 1910. 10. 1. 「조선인의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의 임용에 관한 건」.

24) 일본 재판소구성법은 1890년 2월 8일 법률 제6호로 제정되었고 그 시행을 위하여 1892년 5월 15일 사법성령 제3호로 ‘판검사등용시험규칙’이 공포되었다. 이 시험규칙에 따라서 두 차례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일본의 판검사로 임용하였다. 제1차 시험은 사법관시보가 되기 위한 시험인데,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필기 및 구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단 제국대학 법과졸업자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되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사법관시보로 채용되어 1년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시보의 실무시험을 치렀다. 이것이 제2차 시험이다. 시험과목으로는 판결문 작성과 구술시험이었다. 이 밖에 3년 이상 제국대학 법과교수, 변호사로 재직할 자는 두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였다. 일본에서는 판검사등용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따로 실시되었으나 1919년에 ‘고등시험령’에 의하여 통합되었다. 이 ‘고등시험령’에 의한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는 1923년부터 실시되었다(김창록, 「식민지 조선의 법조 양성: 법조 자격 및 시험제도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41(법과사회이론학회, 2011); 법원행정처 편, 『한국법관사』(육법사, 1971), 51면).

25) 김병화, 『한국사법사(근세편)』(일조각, 1981), 89~100면.

부 판사 또는 검사에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만 문관고등시험위원의 전형 방식이나 구체적인 시험과목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1911년 1월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교”를 구체화하여 일본 사립대학인 中央대학, 明治대학, 法政대학, 京都法政대학, 關西대학, 慶應義塾대학부, 日本대학, 早稻田대학을 지정하였다.²⁶⁾ 이 제령 7호 규정대로라면 명치대학과 일본대학 졸업생인 김병로는 조선총독부 판사로 특별임용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제는 첫째 조선총독부 재판소의 판검사를 임용할 때 일본의 재판소구성법에 근거한 ‘有資格者’ 즉 현직 판검사 및 사법관 시보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둘째 통감부의 일본인과 조선인 판검사를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셋째 조선인 중 자격이 있는 자를 특별전형을 통해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임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과 본국 일본의 판검사를 동일하게 일본의 재판소구성법에 근거한 ‘유자격자’ 중에서 임용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다보니 ‘유자격자’의 확보가 필수적이었고, 일제는 통감부 시절부터 정규 자격을 갖춘 사법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원에 못 미칠 때가 많았다. 따라서 앞의 둘째와 셋째의 방침을 세운 이유는 사법관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인 판검사만을 가지고 조선총독부 재판소를 운영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통감부 출신의 조선인 판검사도 이들에게는 당분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다.²⁷⁾ 조선총독부 재판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사법관 인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현상은 지속되었다. ‘유자격자’ 즉 정규 자격을 갖춘 사법관의 확보는 조선총독부 사법부 당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²⁸⁾ 그래서 부족한 사법관을 확보하기 위해 제령 7호에 의해 조선인으로

26) 『조선총독부관보』, 1911. 1. 19. 「朝鮮總督府告示 제7호」.

27) 구한국과 통감부 출신의 조선인 판검사 중 상당수는 조선총독부 설치를 전후한 시기에 퇴직하였다. 1909~1910년 사이에 사망하거나 轉官한 자를 제외한 퇴직자는 28명이나 되었다. 이들 모두가 나라를 빼앗긴 울분으로 사직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상당수 판검사들이 동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일제는 화유책의 일환으로 이들을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임명한 점도 있을 수 있겠다(전병무, 앞의 책, 40면).

28)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역사비평사, 2010), 468면.

자격이 있는 자를 특별전형을 거쳐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임용하였던 것이다.²⁹⁾ 이 제령 7호에 의거하여 조선총독부는 아래와 같이 1910년대 42명의 조선인을 조선총독부 판검사로 특별임용하였다.

【표 3】 1910년대 조선총독부 신임 사법관 임용 현황

연도	일본인				소계	조선인				소계	합계
	판검사	시보	서기	기타		판검사	시보	서기	기타		
1910	통감부에서 승계				241	통감부에서 승계				76	317
1911	18				18(13)					(13)	18(26)
1912	2				2(27)			4		4(28)	6(55)
1913	10		2		12(14)			2	1	3(13)	15(27)
1914	10				10(16)			11	1	12(4)	22(20)
1915		8			8(3)			3		3(1)	11(4)
1916	7	5			12(11)			4		4(1)	16(12)
1917	6	5			11(10)			6		6(5)	17(15)
1918	2	6			8(3)			6		6(4)	14(7)
1919	4	6			10(16)			3	1	4(5)	14(21)
계	59	30	2		91(113)			39	3	42(74)	133(187)

*출처: 전병무,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역사공간, 2012, 52면.

*시보는 사법관시보, 서기는 재판소 서기, () 숫자는 퇴직 판검사 인원.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1910년대 신임 사법관 인원은 133명이고 퇴직한 인원은 187명으로 파악되었고, 둘째 1910년대 특별임용된 조선인의 경우는 재판소 서기 출신 39명, 기타 3명으로 정리되었다. 1910년대도 사법관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1910년대 특별임용된 조선인 대부분이 재판소 서기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일제가 재판소 서기 출신을 특별임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례가 참고된다. 1915년 6월 조선총독부 사법부장 國分三亥는 재판소 및 검사국 감독관회의에서, “조선인 서기 중 판검사의 자격이 있고 특히 장래가 유망하

29) 물론 여기에는 조선인의 지식인을 포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다고 인정된 지는 사무의 수습을 위해 편의가 많은 재판소에 배치하여 집무 시키는 한편 관검사의 실무를 수습시켜 그 성적을 수시로 보고하여 異日 間選의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바란다.”³⁰⁾라고 하였다. 즉 제령 7호에 의거하여 관검사의 자격이 있는 조선인 서기를 대상으로 특별임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법률소양을 갖추고 현재 사법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재판소 서기의 조선인이 가장 적당했던 것이다. 따라서 제령 7호는 재판소 서기 출신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소 서기는 판임관이다. 이들이 재판소 서기(판임관)에서 조선총독부 관검사(고등관)로 특별임용된다는 것은 곧 승진과 출세를 의미한다.

한편 기타 3명은 재판소 서기 출신이 아닌 자들이다. 1913년 11월 21일 조선총독부 警部(판임관)에서 조선총독부 검사(고등관 8등)로 임용된 韓溶, 1914년 10월 22일 경성전수학교 교유(고등관 8등)에서 조선총독부 판사(고등관 8등)로 임용된 梁大經, 1919년 4월 16일 경성전수학교 조교수(고등관 8)에서 조선총독부 판사(고등관 8등)로 임용된 김병로 등이다.³¹⁾

한용의 경우 조선인으로는 전무후무하게 경찰 경부에서 검사로 특별임용된 사례이다. 일제는 강제병합 이후 검사가 부족하자 1912년 3월 20일 조선총독부훈령 제13호에 의해 지청소재지에 재근하는 총독부의 警視, 警部를 소관지방법원검사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지방법원지청검사의 직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³²⁾ 아마도 한용은 검사로 특별임용될 무렵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한용 역시 재판소 서기와 같이 판임관에서 고등관으로 승진한 케이스이다. 그런데 김병로와 양대경은 이미 고등관에 재직하고 있었다. 판임관이었던 재판소 서기와는 달리, 김병로 등의 조선총독부 관검사 임용은 형식적으로 본다면 승진이 아니라 轉任에 가까웠다. 따라서 김병로의 판사전형의 인사절차는 재판소 서기 출신들과

30)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 편, 『國分司法部長官注意事項(1915년 6월)』, 『總督訓示及法務局長注意事項集』(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 1938), 94면.

31) 『조선총독부관보』, 1911. 11. 25, 1914. 1. 6, 1919. 4. 23.

32) 법원행정처 편, 『한국법관사』(육법사, 1971), 53면.

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³⁾

결국 김병로의 판사임용은 3·1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법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법관 특별임용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는 【표 3】에서도 확인되는바, 1919년에 새롭게 임용된 사법관은 일본인 10명, 조선인 4명 합계 14명으로 이전 연도들에 비해 보통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김병로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독립운동 사건의 재판에 관여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지적할 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김병로가 밀양지청 판사로 약 1년간 재직했다는 틀린 사실을 전제로 이 문제를 검토했다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김병로는 밀양지청 판사로 임용된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부산지방법원으로 보임되었다. 따라서 밀양지역의 3·1운동과 관련한 검토는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밀양지청 판사를 전제로 했던 한인섭은 김병로의 독립운동 재판 참여에 대해, “우선 초임인데다 조선인인 판사에게, 조선인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예민한 재판을 곧바로 맡긴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일제는 조선인을 판사로 임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으며, 그 경우에도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특히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맡기는 경우란 매우 드물었다.”³⁴⁾라고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해는 아마도 일제하 조선인 판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반영일 수 있다. 더욱이 김병로가 판사로 있을 때 판결한 3·1운동 판결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인식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역측에 불과하며, 사실과도 다르다. 일제하 조선인 판사가 항일민족운동사건의 판결에 참여한 사례는, 합의부 판사나 혹은 단독 판사나와의 차이는 있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예컨대 1919년 당시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 판사로 재직했던 전병하의 경우는 15건의 3·1운동 관련 재판에 단독 판사로 참여하였다.³⁵⁾ 일제하 조선인 판사는 승진과 봉급 등에서 일본인 판사에 비해

33) 김병로의 경우처럼 고등판에서 고등판으로의 보직변경은 당시 관련 법령에도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설사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소 서기 출신의 전형방식과는 달랐을 것이다.

34) 한인섭, 앞의 책, 71면.

차별대우를 받았지만, 특정 사건 즉 독립운동사건 등의 재판에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김병로 판결문의 존재 여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2004년에 보고된 3·1운동 판결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개하지 않은 판결문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3·1운동 판결문이 약 3,500건인데 부산지방법원에서 작성된 판결문은 약 4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³⁶⁾ 게다가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사자의 착오인지는 몰라도 이 41건은 동일한 사건 즉 1919년 3월 29일 경남 동래의 구포시장에서 일어난 3·1운동 관련자들이었다.³⁷⁾ 현존하는 부산지방법원의 3·1운동 판결문이 이와 같이 매우 적는데, 이를 가지고 판사 김병로의 판결문 존재 여부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된다. 김병로가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고 또 3·1운동 혹은 독립운동사건의 재판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부정하기 보다는 가인이 왜 판사가 되었으며, 이후 그의 인생에 있어 판사의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변호사 개업 이후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김병로가 판사직에 나가게 된 전후 과정을 살펴보자. 이에 대해 김병로는 일제하 한 잡지에 기고한 「放浪, 教授, 辯護士」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이력저력하는 사이에 대학을 맞추고 나올 때 작정은 보성전문의 전임교수될 욕심을 가졌섯으나 일이 그러케 못되어 전수학교 교수가 되어 국제사법과 형법, 민법 총칙, 친족상속 등을 마터 가르키게 되었다. 그러면서 얼마 뒤부터 교장 윤익선씨의 청으로 보전강사를 겸하였다. 한참 그리고 있다가 歐洲大戰통에 경제계가 융성웅성한 것을 보고 실업계에 아조 투신하려고 어느 회사의 전무로 內交渉을 맞고 학교

35) 전병무, 앞의 책, 〈부록 3,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의 시국관련 사건 등 주요 판결 사례〉 참조.

36)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노리가즈 사사가와 편, 『3·1운동관계판결일람표 중간보고 2004』(국제기독교대학21세기COE프로그램, 2004), 참조.

37) 부산지방법원 예심과, 「김옥겸 등 42인 판결문」, 1919. 7. 16(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kr>).

를 나오라는데 어느 편의 만류로 결국 재판소 판사를 9개월간 다니다가 그만 집어 뿌리고 현준호씨와 가치 호남은행을 바로 잡아 노흔 뒤 1919년 1월 35세에 변호사 간판을 내걸고 재판소 출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복이나 법모를 두 번 갈아 쓰도록은 오래 다니지 말자고 결심하였으나 작년에 모자가 떠나져서 할수 업시 새것을 가라 썼다. 변호사를 하여 돈을 모으자는 생각은千에 萬에 하나도 업는 일이니 그나마도 조선사람으로 안져서 이런 것인들 내어노코 다른 할 일이 잇서야 지. 당분은 이 직업을 계속할 맞게 벌수 업슬 줄 안다.³⁸⁾

이 회고의 글이 겸양의 언사인지는 몰라도, 귀국 무렵부터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 김병로의 인생 진로는 자신의 뜻과는 달리 주변의 영향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첫째, 일본에서 귀국할 때 애초 보성전문(보성법률상업학교)의 전임교수가 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성전수학교 조교수가 되었고, 둘째, 제1차 세계대전(1914. 7~1918. 11) 와중에 학교를 그만두고 실업계에 투신하려고 하였으나 “어느 편의 만류”로 포기하고 판사가 되었으며, 셋째, 재판소 판사직을 내던지고 바로 변호사로 나간 것이 아니라, 玄俊鏞(1889~1950)와 함께 호남은행 창립에 관여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1915~1920년 사이 김병로는 식민지 조선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변과 상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누구나 그러하듯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며 순간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이때 작게는 자신의 능력, 가정환경, 친분 관계 등과 크게는 국가와 사회 현실 혹은 공동체의 현실 등이 작용한다.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선택하고 결정하여 한 행위는 자신이 책임져야함은 물론이다. 이 시기의 김병로 역시 고민과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었던 것 같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 그리고 민족자결주의 등 세계사적 흐름의 변화가 그의 고민을 더욱 깊게 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19년 1월 경성전수학교에 재직하던 김병로는 「講和 도래와 교육주의」라는 제목의 시사적인 글을 발표하였다.³⁹⁾

38) 김병로, 「放浪, 教授, 辯護士」 『삼천리』 2호, 1929. 9.

39) 김병로, 「강화 도래와 교육주의」 『반도시론』 제3권 제1호, 1919. 1.

여기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은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한 정의와 평등의 승리로 파악하고, 人道文明의 서광이 세계적, 영구적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전쟁 이후 “국민자결, 국제민본, 경제균등이라는 주의 정신”이 현대사조의 밑바탕에 변화의 계기를 초래하므로, “국민적 훈련과 국민적 통일되는 신념에 기초하여 세계적 사상과 세계적 기운을 調理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앞으로 국민적 훈련과 대비를 역설하였던 것으로, 전체 흐름은 3·1독립선언서에서 보는 정세인식과 유사하다.⁴⁰⁾

이러한 인식 속에 김병로는 한때 실업계로의 투신을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조선의 실업을 일으켜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차원이었을 것이다. 해서 경성전수학교를 그만두고 한 회사의 전무로 취직하고자 했다. 마침 일본은 전쟁 특수로 면직물을 비롯한 철강, 화학 제품 등을 수출하면서, 경제계는 일대 호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경제불황과 재정 위기를 동시에 해소하였다. 이런 호황에 편승하여 경제계 진출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민족경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큰 뜻을 품었을 것이다. 김병로는 실제로 판사 퇴임 이후에도 현준호를 도와 광주의 호남은행 창립에 깊숙이 관여하였다.⁴¹⁾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어느 편의 만류”로 포기하고 판사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고민하는 김병로의 모습을 고려하지 않고, “경성전수학교 교유로부터 판사로의 전직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라든지, “그는 판사직을 오래 하고 싶었으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던진 게 아니라, 애초의 목표가 판사직이 아니었다.”라는 견해⁴²⁾는 앞서 회고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이 시기 김병로의 고민과 결정이 ‘변호사가 되기 위함’에 있었다는 데 초점을 맞춰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김병로가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판사직으로의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40) 한인섭, 앞의 책, 64~65면.

41) 1920년 8월 16일 광주에서 개최된 호남은행의 개업총회에서 김병로는 전무취체역(현준호)에 이어 6인의 취체역 중 1인에 피선되었다(『매일신보』, 1920. 8. 23).

42) 한인섭, 앞의 책, 72~73면.

가인은 “어느 편의 만류” 이후부터 변호사의 자격을 염두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데 판사로 특별임용은 조선총독부 당국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자신이 자원했다기 보다는 “만류”한 누군가 즉 총독부 당국자이거나 주변인의 추천으로 성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타의든 자의든 간에 조선총독부의 판사임용은 정밀한 신원조사가 필수였다.⁴³⁾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김병로는 지중자에했을 것이며, 비록 변호사의 자격 획득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지만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때문에 가인 자신의 회고담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판사에 임용된 김병로는 재판실무에 밝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로 1년 동안 재직하면서 법전 속의 법과 법정 속의 법 두 모습을 보고 비교하며 법정 속의 법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였을 것이다.⁴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게 된 김병로는 1920년 4월 17일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그해 12월 24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변호사등록을 했다.⁴⁵⁾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마도 판사직에 대한 지속의 의미, 그리고 장래의 할 일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다지는 기간이었던 것 같다. 즉 “변호사를 하여 돈을 모으자는 생각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없었다.”와 “일정의 박해를 받아 비참한 질곡에 신음하는 동포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려 함에 있었다.”⁴⁶⁾라고 한 그의 회고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해명이자 결심이었던 것이다.

IV. 김병로와 형사변호공동연구회

1920년대 항일변호사들의 조직적 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43) 사법관의 신원조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병무의 논문(『일제시기 조선인 사법관료의 형성 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6집(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168~171면)을 참조.

44) 정공식, 앞의 책, 101면.

45) 『조선총독부관보』, 1921. 1. 17.

46) 김병로, 『수상단편』(김진배, 앞의 책, 265면).

형사변호공동연구회(형사공동연구회)의 조직과 활동이다. 김병로는 3·1운동 이후 항일민족운동사건이 급증하자 독립운동가들의 변론을 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허헌 등과 함께 이 연구회를 결성하였다. 향후 이 연구회를 “항일변론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런데 이 단체의 목적과 활동내용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일치한 견해를 보였지만, 그 명칭, 창립시기, 참여변호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아래는 이 단체를 언급할 때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인 글인데, 여기서는 한인섭의 책에 실린 글을 인용하였다.⁴⁷⁾

A) 김병로는 1923년 허헌, 김태영, 이승우, 김용무 등 당시 명망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종로 인사동 75번지에 ‘형사변호공동연구회’를 만들어 ‘한 사람에 대한 보수로 5명이 공동연구하여 변호한다’는 취지로 항일법조인들의 공동전선을 형성했다.⁴⁸⁾

B)-(2) 형사공동연구회의 창설

내가 변호사사무실을 개시한 직후부터 ‘대동단’ 사건을 비롯하여 3·1운동의 여파로 계속 발생한 사건, 기타 사상에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모든 원호에 응분의 노력을 하여 왔으나, 이에 요하는 비용은 물론 부담하는 바이므로, 요급한 사건을 돌연히 원거리 지방에 가게 될 때에는 비용관계로 곤란을 느낀 바 있음에 감하여 나의 동료 변호사 중에 보조를 같이하여 오던 이인, 권승렬, 김태영, 김용무, 허헌 등 제씨와 협의하여 이 연구회를 창설한 것인데, 표면으로는 평범한 명칭이었으나, 이면으로는 사상범 원호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이며, 원호의 대상으로는 그 당시의 악법인 보안법, 제령 제7호, 치안유지법, 신문지법, 집회취체령에 위반한 사건이었으며...⁴⁹⁾

47) 한인섭, 앞의 책, 153~154면 재인용. 다만 각각의 글에는 원래 글의 출처와 한인섭의 책에서 인용한 면수를 함께 적었다.

48) 김진배, 앞의 책, 42면(한인섭, 앞의 책, 153면).

49) 김병로, 「수상단편」(김진배, 앞의 책, 266~267면; 한인섭, 앞의 책, 154면).

○-내가 기억하는 대로는, 우리는 그것을(1932년 안창호의 1차투옥과 재판을 말함) 우리 형사공동연구회의 주관으로 맡았다고 봅니다. 법정에서 변호는 두세 사람이 하여도 심의는 같이 하였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사상범은 무료변호하였고 멀리 평양, 함흥, 신의주 같은 데도 출장해갔지요, 공동연구회의 금전은 공동관리라 사적으로 쓰고 싶어도 절대 못썼지요, (웃음) 소속 변호사는 이인, 허헌, 권승렬, 이창휘, 나 이렇게 다섯 명이었는데 도산선생 변호에는 우리 다섯이 다 참가했던 것 같습니다.⁵⁰⁾ (이상 밑줄은 필자)

A)는 김진배의 글이고 B)와 C)는 해방 후 김병로의 회고의 글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단체 명칭, 참여 회원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참여회원에 대한 부분은 김병로 자신조차도 다르게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서용태는 명칭은 ‘형사공동연구회’이고, 창립 시기는 1926~1927년 전후이며, 회원은 金炳魯, 李仁, 許憲, 權承烈, 李昌輝(내지 金泰榮, 金用茂) 등 5~6명이라고 하였다.⁵¹⁾ 전병무는 명칭은 ‘형사공동연구회’이고, 창립 시기는 1926년 이후이며, 회원은 김병로, 이인, 허헌, 권승렬, 이창휘, 김태영, 김용무 등 7~8명이라고 하였다.⁵²⁾ 한인섭은 명칭은 ‘형사공동연구회’이고, 창립 시기는 1923~1924년 사이이며, 창립 때 회원은 김병로, 허헌, 김태영, 이승우, 김용무 등 5인이었으나 이후 이승우가 빠지고 이인, 이창휘, 권승렬이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⁵³⁾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 명칭은 ‘형사공동연구회’로 합의했지만, 설립 시기는 1923년~1924년과 1926년~1927년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당시의 정식 명칭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였고, 창립 시기는 1923년 2월 혹은 그 이전이었다. 또한 참여 회원도 주로 허헌·김병로·이인·권승렬·이창휘 등으로 파악하

50) 도산안창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도산안창호전집』 제13권(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0), 589~500면(한인섭, 앞의 책, 154~155면).

51) 서용태, 「1920~1930년대 권승렬의 변호사 활동」, 『지역과 역사』 25(부경역사연구소, 2009), 254면.

52) 전병무, 「일제하 항일변호사 이창휘의 생애와 활동」, 『한국학논총』 제46호(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349~350면.

53) 한인섭, 앞의 책, 155~158면.

고 있는데, 이 역시 오류로 창립 당시 회원은 김병로, 허헌, 김태영, 이승우, 김용무 5인이었다. 연구회가 창립된 1923년부터 1926년 사이에는 적어도 이인·권승렬·이창휘는 정식 멤버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동아일보』에 실린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에서 『동아일보』에 게재한 광고는 현재 총 11회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9회는 창립 직후인 1923년 2~3월에 집중적으로 게재하였다. 나머지는 1924년 1월에 1회, 1926년 4월에 1회인데, 마지막인 1926년에만 ‘형사공동연구회’라는 명의로 게재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표 4】와 【그림 2】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동아일보』 광고

명칭	회원명	주소	게재 일시
형사변호공동연구회	허헌, 김태영, 김병로, 이승우, 김용무	경성부 인사동 75번지(전화 858번)	1923. 2. 19
상동	상동	상동	1923. 2. 23
상동	상동	상동	1923. 2. 25
상동	상동	상동	1923. 2. 28
상동	상동	상동	1923. 3. 6
상동	상동	상동	1923. 3. 9
상동	허헌, 김태영, 김병로, 이승우, 김용무, 이종성	상동	1923. 3. 12
상동	상동	상동	1923. 3. 19
상동	상동	상동	1923. 3. 26
상동	허헌, 김태영, 김병로, 이종성, 김용무	경성부 관철동 119번지(전화 904번)	1924. 4. 1
형사공동연구회	허헌, 김태영, 김병로, 김용무, 이종성	경성부 관철동 119번지(전화 904번, 허헌) 경성부 공평동 49번지(전화 547번, 김태영·김병로·김용무) 경성부 돈의동 76번지(전화 106번, 이종성)	1926. 4. 25

이 포함되었다. 그러다가 1924년 4월 1일자 광고부터는 항일운동 변론에 흥미를 잃기 시작한 이승우가 빠져, 다시 5인이 되었다. 광고에서도 확인되듯이 만약 이인·권승렬·이창휘 등의 변호사가 연구회에 참가했다면, 1926년 4월 이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회의 회원은 대체로 5인~6인으로 유지하면서, 이승우의 경우처럼 항일전선에서의 탈락 등 결원이 생기거나⁵⁴⁾ 필요에 따라 항일변론에 선두에 섰던 이인·권승렬·이창휘 등 변호사들이 합류했을 것으로 보인다.⁵⁵⁾

그런데 형사변호공동연구회가 처음 발족했을 때는 인사동에 별도의 사무실까지 마련하고 출범하였다. 하지만 1924년 1월 광고에는 사무실이 ‘관철동 119번지’ 즉 1926년 광고에서 보이는 허헌의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곳으로 되어 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사무실 유지가 어려웠거나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허헌의 사무실을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사무실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흥미로운 사실은 1926년의 광고에 의하면, 김병로, 김태영, 김용무가 공평동의 같은 변호사사무실을 쓰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변호공동연구회가 의미있는 활동을 한 기간은 한인섭의 지적처럼 1923년부터 1932년까지 약 10년 이내였다. 허헌이 ‘민중대회 사건’으로 구속된 후인 1932년부터는 ‘김병로·이인의 합동변호사사무실 시대’가 열렸는데, 이때는 굳이 모임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구심점 역

54) 예컨대 김태영은 원산총파업에 깊이 관여했다가 1930년 1월 이른바 사기미수 및 독직죄로 구속되었고(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경인문화사, 2012), 535~537면), 김용무는 “한동안 사상사건 변론에 열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도수가 적어진 듯 하고 돈벌이 잘되는 민사소송을 많이 맡아 보는 모양”이라는 평판을 받았다(동허자, 「변호사 평간기(1)」, 『동광』 제31호, 1932. 3).

55) 가인을 포함한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회원들은 주지하듯 1941년 ‘사상사건’에 대한 지정변호사제가 실시되면서 항일 변론권을 봉쇄당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이 지정변호사제의 지정변호사 인원수에 대한 오해가 있는 듯하다. 예컨대 한인섭은 “1941년에는 경성변호사회 20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68인을 지정했는데, 1943년에 이르면 경성변호사회 6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2인으로 현격히 줄어든다.”라고 하였다(한인섭, 『가인 김병로』(박영사, 2017), 405~406면). 하지만 1943년의 22인은 추가로 지정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41년 지정변호사제를 실시한 후 거의 해마다 지정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56) 조심스럽지만,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사무실을 허헌의 사무실에 두었던 점, 광고에서는 항상 허헌의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온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변호공동연구회는 허헌이 주도했다는 인상을 준다.

할을 했기 때문이다.⁵⁷⁾

형사변호공동연구회 회원 전체가 참여하여 변론한 의미있는 첫 재판은 무엇일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볼 때, 金相玉(1889~1923) 의사 사건이 아닌가 한다. 김상옥 의사는 1923년 1월 12일 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도피하였다. 일본 경찰은 집중적인 조사와 수색 끝에 김상옥의 은신처를 포위하였다. 김상옥은 권총을 들고 치열한 항전을 벌이다 결국 자결, 순국하였다. 일본 경찰은 사건 관련자로 김한, 안홍한, 윤익중, 서병두, 정설교, 신화수, 전우진, 이해수 등을 체포하고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였다. 1923년 5월 12일 피고인 8인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었는데, 김병로, 허헌, 이승우, 김용무, 김태영 전원이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변론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이전 재판과는 차원이 다른,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논변하는 법정투쟁을 전개하여 본격적인 항일변론의 시대가 열렸음을 세상에 알렸다.⁵⁸⁾

V. 맺음말

이 글은 일제하 김병로의 경력과 활동 중 경성전수학교 경력 문제, 판사임용과정 및 활동 문제, 형사변호공동연구회 문제 등에 대해 객관적 자료에 입각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연구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기존의 자료들을 세밀히 재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는 성과도 올랐다. 새롭게 드러난 내용과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병로의 경성전수학교 경력 문제이다. 가인은 1915년 9월 (前)경성전수학교 교유(판임관)로 임명되었다가, 1916년 4월 1일 전문학교인 경성전수학교 조교수(판임관)로 수평 이동하여 다시 임명되었다. 그러다가 1918년 10월 10일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를 겸하면서 고등관 8등 즉 주임관으로 승진하였다. 경성전수학교 재직 시절 그의 경력에서의 핵심은 판임관에서 고등

57) 한인섭, 앞의 책, 157~158면.

58) 김상옥 의사 사건의 개요 및 공판과정, 변론내용 등에 대해서는 한인섭, 앞의 책, 85~96면 참조.

관으로의 승진이였다. 고등관 8등으로의 승진은 향후 조선총독부 판사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김병로의 판사임용과 관련한 문제이다. 우선 김병로의 판사임용은 3·1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법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법관 특별임용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때 특별임용된 조선인 사법관은 대부분 재판소의 서기 출신이었다. 김병로의 경우는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고등관에서 고등관으로의 보직이동이었기 때문에, 서기 출신의 전형방식과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판사직을 선택하기 이전 김병로는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 그리고 민족자결주의 등 세계사적 흐름의 변화를 인식하며 식민지 조선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그가 내린 첫 결정은 민족경제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경제계로의 투신이었다. 그러나 “어느 편이 만류”로 포기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판사의 길을 선택하였다. “변호사를 하여 돈을 모으자는 생각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없었다.”라고 한 그의 회고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해명이자 결심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판사의 길을 선택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 김병로의 고민과 결정을 모두 ‘변호사가 되기 위함’에 초점을 맞춰 해석한 기존 연구는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인은 1919년 4월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로 보임되었다가 곧바로 동년 5월에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다시 보임되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약 1년간 재직하다가 의원면직하였다. 이 점은 이제까지 연구들이 간과한 사실로, 기존 연구자들이 밀양지청 판사로 확신하여 전개한 서술은 틀린 것이다. 그리고 김병로가 판사 재직 시절 항일민족운동 사건에 참여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제하 조선인 판사가 항일민족운동사건의 판결에 참여한 사례는, 합의부 판사나 혹은 단독 판사나 차이는 있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김병로가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고 또 3·1운동 혹은 독립운동사건의 재판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부정하기 보다는 가인이 왜 판사가 되었으며, 이후 그의 인생에 있어 판사의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변호사 개업 이후 어떠한 행적을 보였는가 하는 것 등이 더 중요한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셋째, 형사변호사공동연구회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연구회는 1923년 2월경 서울 종로 인사동 75번지에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명칭은 “형사변호사공동연구회”였으며, 1926년 단계에서 “형사공동연구회”로 개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회원은 대체로 5인~6인으로 유지되었다. 창립 초기에는 김병로, 허헌, 이승우, 김용무, 김태영 5인이었고, 한때 이종성의 가세로 6인 체제가 되었다. 1924년 이승우가 항일전선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5인 체제가 되었다. 1926년 4월 이후 항일변론에 선두에 섰던 이인·권승렬·이창휘 등이 합류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변호사공동연구회 회원 전체가 참여하여 변론한 의미 있는 첫 재판은 1923년 5월부터 시작된 김상옥 의사 사건으로,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논변하는 법정투쟁을 전개하여 항일변론의 새 장을 열었다.

한편 형사변호사공동연구회는 일본 내 변호사들의 단체인 自由法曹團을 모델로 했던 것 같다. 일본의 자유법조단은 1921년 고베(神戸)의 노동쟁의 탄압사건 조사를 위해 꾸려진 조사단을 계기로 성립된 변호사단체이다.⁵⁹⁾ 조선인 변호사들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자유법조단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1923년 8월 김시현 등의 의열단 사건에서 자유법조단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후세 다츠지(布施辰治)와 함께 변론하기도 하였다.⁶⁰⁾ 또한 이인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선인변호사협회와는 별도로 “우리는 자유법조단을 조직하기도 했다.”고 회고하였다.⁶¹⁾ 다만 이인은 생전에 “형사변호사공동연구회”라는 명칭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아무튼 이인의 회고에서 이 연구회가 일본의 자유법조단과 유사한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59) 自由法曹團(JLAF) 홈페이지(<http://www.jlaf.jp/index.html>)의 소개란 참조. 영어명이 ‘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이라서 오늘날에는 약칭 JLAF로 불린다.

60) 한인섭, 앞의 책, 97~103면.

61) 이인, 『반세기의 증언』(명지대학출판부, 1974), 76면.

■ 참고문헌

1. 자료

- 『조선총독부관보』,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동아일보』, 『매일신보』, 『동광』, 『삼천리』, 『반도시론』
 경성법학전문학교 편, 『경성법학전문학교일람』, 1923.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 편, 『總督訓示及法務局長注意事項集』, 1938.

2. 논저

-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노리가즈 사사가와 편, 『3·1운동관계관결일람표 중간보고 2004』, 국제기독교대학21세기COEプログラム, 2004.
 김병화, 『한국사법사(근세편)』, 일조각, 1981.
 김진배, 『가인 김병로』, 삼화인쇄주식회사, 1983.
 김창록, 「식민지 조선의 법조 양성 : 법조 자격 및 시험제도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41, 법과 사회이론학회학회, 2011.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민음사, 1988.
 대한변호사협회 편, 『韓國辯護士史』, 대한변호사협회, 1979.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법원행정처 편, 『한국법관사』, 육법사, 1971.
 서용태, 「1920~1930년대 권승렬의 변호사 활동」, 『지역과 역사』 25, 부경역사연구소, 2009.
 서울법대백년사발간준비위원회 편, 『서울법대백년사 : 자료집(광복전 5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1987.
 이 인, 『반세기의 증언』, 명지대학출판부, 1974.
 장 신, 「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 『역사문제연구』 8, 역사문제연구소, 2003.
 전병무, 「일제시기 조선인 사법관료의 형성 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4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전병무,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역사공간, 2012.
 전병무, 「일제하 항일변호사 이창휘의 생애와 활동」, 『한국학논총』 46,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정궁식, 「사법부 독립의 초석, 가인 김병로」,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 김병로·최대교·김홍섭』, 일조각, 2015.
 秦郁彦 편, 『日本官僚制總合事典 1868-2000』, 東京大學出版會, 2001.
 최종고, 「김병로」, 『한국의 법률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경인문화사, 2012.
 한인섭, 「법학교육자 김병로-경성전수학교 및 보성전문학교에서 법학 강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77, 고려대 법학연구원, 2015.
 한인섭, 『가인 김병로』, 박영사, 2017.

<Abstract>

Re-examination on the politeness and activities of Kim Pyong Ro under the Japanese Emperor

Jeon, Byung-Moo*

This thesis examined the career problems of Kyung Sung Professional School(京城專修學校), the problems related to appointment of judges, and the problems of the 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刑事共同研究會) on Criminal Defense among Kim Pyong Ro's career and activitie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 tried to rectify the errors of existing research by examining it based on objective data.

In this process, I have also been able to discover new data.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new contents of Kim Pyong-Ro's activities and my opinion on this.

First of all, Kim Pyong Ro was promoted to the rise of high-ranking at Panimkwan(判任官) at the time of Kyung Sung Professional School. This led him to go to the Chosun governor general.

Second, Kim Pyong Ro's appointment as a judge has nothing to do with the 3·1 movement. This was the result of the special appoint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o solve the shortage of the judiciary. And he resigned from the court as a judge of Busan District Court, not a judge of the Milyang Branch of Busan District Court.

* Research Professor, Humanities Institutes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ird, the Joint Study Group on Criminal Defense is the name at the time of its foundation, but it is possible that it was renamed as “the 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 in 1926. This study group is thought to have been made with a similar purpose to the 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 I would like to retain this as a future task.

[Key Words] Kim Pyong Ro(金炳魯), Kyungsung Professional School(京城專修學校), 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刑事共同研究會), Busan District Court(釜山地方法院), 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自由法曹團)